종 합 감 사

# 감 사 보 고 서

- 부패방지국·청렴연수원 -

2025. 07.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대상부서 현황 ····· 3

Ⅲ. 감사결과 ····· 8

1. 감사결과 총괄 ····· 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11

(1) 이첩한 행동강령 신고의 처리지연 현황 위원회 보고 미이행(주의·개선) ·· 12

(2) 이첩한 청탁 신고의 처리지연 현황 위원회 보고 미이행(주의·개선) ··· 21

(3) 이첩한 이해충돌 신고의 처리지연 현황 위원회 보고 미이행(주의·개선) ·· 31

(4) 이해충돌방지법상 비실명 대리신고 미도입(개선) ····· 39

(5) 청렴컨설팅 심층진단분석 프로그램 설계 부적정(통보) ····· 43

(6) 이러닝 교육과정별 수료시간 기준 통일성 부재(개선) ····· 49

(7)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활용 미흡(주의) ····· 55

(8)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시정) ····· 59

(9)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시정) ····· 64

(10)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주의) ····· 68

(11) 영수증 실명 서명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 미준수(주의) ····· 71

(12)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찾아가는 부패방지 교육’ 추진
(통보[모범사례]) ····· 74

(13)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 등을 위한 행동강령 이행점검 강화
(통보[모범사례]) ····· 78

(14)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현장점검으로 법 이행력 제고
(통보[모범사례]) ····· 81

(15) 대학협업 청렴특강 교육운영(통보[모범사례]) ····· 83

# Ⅰ.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의 조직과 주요 사업 수행, 예산·회계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국·청렴연수원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주요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2021. 6월부터 2025. 1월까지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낭비 요인 유무 확인, 지난 감사결과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3. 감사실시 과정

본 감사에 앞서 감사 대상부서인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에 2025. 04. 08. 공문을 발송하여 감사 대상 자료를 2025. 04. 11.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2025. 04. 23.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감사대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2025. 04. 28.부터 06. 03.까지 25일간 감사반장인 감사담당관 포함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제출된 자료와 추가 요구자료 검토,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부적정 및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2025. 06. 04.부터 06. 20.까지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는 등 주요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대상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개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2025. 07. 09.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Ⅱ. 감사대상부서 현황

## 1. 임무와 기능

부패방지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반부패 정책의 기획·집행과 청렴문화의 확산, 국가청렴지수 관리, 신고사건 조사·처리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청렴연수원은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청렴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 청렴교육 강사 양성·관리·지원, 반부패·청렴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조직과 인력 현황

부패방지국은 [그림 1]과 같이 2025년 1월말 현재 5개과, 1센터 및 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정원은 55명이며, 현재 인원은 5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부패방지국 조직도 및 정·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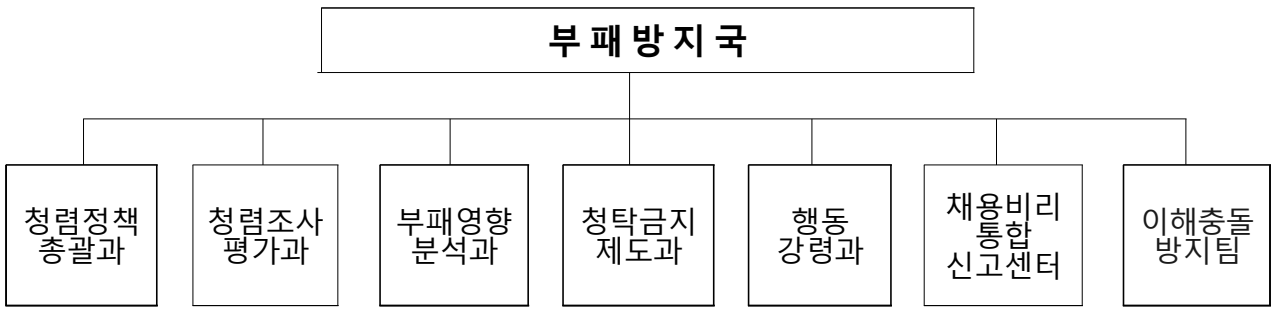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 계 | 고공단 | 3급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이하 | 전문경력관 | 특정직 |
|---|---|---|---|---|---|---|---|---|---|---|---|
| 정원 | 55 | 1 | - | 2 | 3 | 6 | 19 | 15 | 9 | = | = |
| 현원 | 57 | 1 | - | 1 | 4 | 2 | 25 | 19 | 5 | = | = |

청렴연수원은 [그림 2]와 같이 2025년 1월말 현재 2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정원은 24명이며, 현재 인원은 23.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 청렴연수원 조직도 및 정·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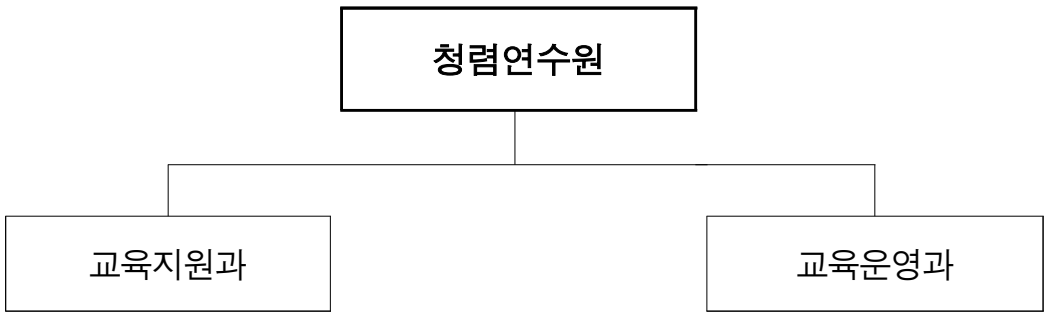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 계 | 고공단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이하 | 전문 경력관 | 특정직 |
|---|---|---|---|---|---|---|---|---|---|
| 정원 | 24 | - | 1 | - | 2 | 2 | 18 | 1 | - |
| 현원 | 23.25 | - | 1 | - | 2 | 3 | 16.25 | 1 | - |

## 3. 예산 현황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부패방지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인식도 조사 27억 7천 7백만원,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1억 6천 9백만원 등 [표 1]과 같이 35억 3천 8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2025년도 부패방지국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 예산(A) | 2025년 예산(B) | 증감 | |
|---|---|---|---|---|
| | | | 차이(C=B-A) | 증감률(C/A) |
| 합계 | **3,734** | **3,538** | △196 | △5.2% |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 **3,066** | **2,984** | △82 | △2.7% |
| 상용임금 | 41 | 42 | 1 | 2.4% |
| 일용임금 | 10 | 10 | - | - |
| 일반수용비 | 106 | 94 | △12 | △11.3% |
| 임차료 | 8 | 8 | - | - |
| 국내여비 | 12 | 11 | △1 | △8.3% |
| 국외업무여비 | 12 | 21 | 9 | 75.0% |
| 사업추진비 | 16 | 12 | △4 | △25.0% |
| 일반연구비 | 2,852 | 2,777 | △75 | △2.6% |
| 고용부담금 | 9 | 9 | - | - |
|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89** | **78** | △11 | △-12.4% |
| 일반수용비 | 36 | 27 | △9 | △25.0% |
| 임차료 | 8 | 8 | - | - |
| 유류비 | 2 | - | △2 | △100.0% |
| 국내여비 | 41 | 41 | - | - |
| 사업추진비 | 2 | 2 | - | - |

| | | | | |
|---|---|---|---|---|
| **청탁금지제도운영** | **244** | **166** | △78 | △32.0% |
| 상용임금 | 36 | 37 | 1 | 2.8% |
| 일반수용비 | 104 | 65 | △39 | △37.5% |
| 임차료 | 14 | 14 | - | - |
| 국내여비 | 46 | 36 | △10 | △21.7% |
| 사업추진비 | 7 | 7 | - | - |
| 포상금 | 30 | - | △30 | △100.0% |
| 고용부담금 | 7 | 7 | - | - |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 **226** | **210** | △16 | △7.1% |
| 일반수용비 | 150 | 150 | - | - |
| 임차료 | 34 | 34 | - | - |
| 국내여비 | 34 | 24 | △10 | △29.4% |
| 사업추진비 | 2 | 2 | - | - |
| 포상금 | 6 | - | △6 | △100.0% |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 **109** | **100** | △9 | △8.3% |
| 상용임금 | 35 | 36 | 1 | 2.9% |
| 일반수용비 | 19 | 11 | △8 | △42.1% |
| 임차료 | 4 | 2 | △2 | △50.0% |
| 국내여비 | 42 | 42 | - | - |
| 사업추진비 | 2 | 2 | - | - |
| 고용부담금 | 7 | 7 | - | - |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청렴연수원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용역비 6억 8백만 원, 일반수용비 6억 1천만원 등 [표 2]과 같이 26억 6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2025년도 청렴연수원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 예산(A) | 2025년 예산(B) | 증감 | |
|---|---|---|---|---|
| | | | 차이(C=B-A) | 증감률(C/A) |
| 합계 | **2,537** | **2,661** | 124 | 4.9% |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 **2,239** | **2,411** | 172 | 7.7% |
| 상용임금 | 432 | 446 | 14 | 3.2% |
| 일반수용비 | 611 | 610 | △1 | △0.2% |
| 공공요금 및 제세 | 88 | 101 | 13 | 14.8% |
| 피복비 | 6 | 6 | 0 | 0.0% |
| 임차료 | 73 | 98 | 25 | 34.2% |
| 시설장비유지비 | 10 | 67 | 57 | 570.0% |
| 일반용역비 | 553 | 608 | 55 | 9.9% |
| 관리용역비 | 30 | 30 | 0 | 0.0% |
| 국내여비 | 4 | 4 | 0 | 0.0% |
| 사업추진비 | 17 | 17 | 0 | 0.0% |
| 일반연구비 | 210 | 192 | △18 | △8.6% |
| 정책연구비 | 40 | 0 | △40 | △100.0% |
| 포상금 | 50 | 40 | △10 | △20.0% |
| 고용부담금 | 85 | 87 | 2 | 2.4% |
| 실시설계비 | 0 | 6 | 6 | - |
| 공사비 | 20 | 79 | 59 | 295.0% |
| 자산취득비 | 10 | 20 | 10 | 100.0% |
| **반부패기술지원(ODA)** | **298** | **250** | △48 | △16.1% |
| 일반수용비 | 73 | 62 | △11 | △15.1% |
| 임차료 | 24 | 19 | △5 | △20.8% |
| 국외업무여비 | 185 | 155 | △30 | △16.2% |
| 사업추진비 | 16 | 14 | △2 | △12.5% |

# Ⅲ.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결과, [표 1]와 같이 총 14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를 요구하고, 4건의 모범사례는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전파·공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 1] 감사결과 현황

| 구분 | 합계 | 시정 | 주의 | 개선 | 통보 | 통보 (모범사례) |
|---|---|---|---|---|---|---|
| 건수 | 14 | 2 | 6 | 5 | 1 | **4** |

감사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부패방지 분야 일반

❶ (**이첩한 행동강령 신고의 처리지연 현황 위원회 보고 미이행**) 이첩한 행동강령 신고에 대해 조사기관의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 지연사유·처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나, 이를 누락함

⇒ 이첩 행동강령 신고의 처리 지연현황 점검 및 위원회 보고 철저**(주의·개선)**

❷ (**이첩한 청탁 신고의 처리지연 현황 위원회 보고 미이행**) 이첩한 청탁 신고의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첩 청탁 신고의 처리 지연현황 점검 및 위원회 보고 철저**(주의·개선)**

❸ (**이첩한 이해충돌 신고의 처리지연 현황 위원회 보고 미이행**) 이첩한 이해충돌 신고의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첩 이해충돌 신고의 처리 지연현황 점검 및 위원회 보고 철저**(주의.개선)**

❹ (**이해충돌방지법상 비실명 대리신고 미도입**)「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등과 달리 비실명 대리신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입법화**(개선)**

❺ (**청렴컨설팅 심층진단분석 프로그램 설계 부적정**) 컨설팅 대상기관에 보다 깊이 있는 내용 전달을 위해 심층진단 분석 용역사업을 추진했으나, 당초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된 과업내용이 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심층진단 용역 추진 시 관리감독 강화 및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우수사례를 게시하여 공유·확산**(통보)**

❻ (**이러닝 교육과정별 수료시간 기준 통일성 부재**) 이러닝 교육과정 수료시간 인정기준이 과정별로 상이(일부는 차시로, 일부는 학습시간으로 인정)하여, 교육과정 간 수료 인정기준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함

⇒ 이러닝 교육과정별 수료시간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기준 마련**(개선)**

## 나. 예산집행 등 공통업무 분야

❶ (**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부적정**)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와 입회가 완료되어야 하나, 이를 미준수(61건)

⇒ 향후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토록 조치**(주의)**

❷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감액하지 않는 등 출장일비를 지급(4건)하고, 출장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한 경우 출장식비를 감액 지급해야 하나 감액 없이 지급(29건)

⇒ 과다하게 지급된 324,870원은 환수하고, 출장비 정산 시 차량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시정)**

❸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가능하나, 2시간 미만 근무자나 정규근무시간 내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 지급(34건)

⇒ 잘못 지급한 238,000원에 대해 환수하고, 특근매식비 지급 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시정)**

❹ (**업무추진비 50만원이상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을 집행할 경우에는 실·국장 전결로 처리해야 함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하여 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미준수(14건)

⇒ 향후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여 50만원 이상 집행 시 실·국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

❺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업무추진비 사용 후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10건)

⇒ 업무추진비 사용 후에는 사용자 실명을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관련 업무 철저 **(주의)**

## 다. 적극행정 등 모범사례

❶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찾아가는 부패방지 교육' 추진**) 신규 공직유관단체의 부담 경감 및 부패방지교육 외 청탁금지.이해충돌.행동강령 연1회 이상 의무교육 이행 편의 도모를 위해 직접 방문·교육 지원**(모범사례, 통보)**

❷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 등을 위한 행동강령 이행점검 강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약18억원, 총13,740건 위반) 적발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규범력 강화 및 부패예방에 기여**(모범사례, 통보)**

❸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현장점검으로 법 이행력 제고**) 지방의회 등과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배우자 운영업체 간 부적정한 수의계약(약31억원, 총1,391건) 체결 등 실태점검 실시 후 기관별 결과 통지**(모범사례, 통보)**

❹ (**대학협업 청렴특강 교육운영**)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매우 높고('24년 95.7점) 일부 대학에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하도록 유도 **(모범사례, 통보)**

##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도 첨부자료 참조(뒷면부터)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주의 및 개선요구

**제　　목**　이첩한 행동강령 신고의 처리지연 현황 위원회 보고 미이행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조 치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라 한다) 제8조, 제12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행동강령 신고'라 한다)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동강령 신고 접수·처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그림 1]과 같은 부패방지종합시스템인 '청렴포털' 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1] 청렴포털 체계

[그림 2] 청렴포털 신고 화면(1)

[그림 3] 청렴포털 신고 화면(2)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우리 위원회는 행동강령 신고의 구체적 신고접수.처리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이하 '행동강령 신고지침'이라 한다)을 예규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행동강령 신고사건은 우리 위원회(☆☆☆☆과)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자의 소속기관 장 등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런데, 행동강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 혐의가 있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 및 「행동강령 신고지침」 제20조제2항 등에 따라 ☆☆☆☆장이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첩을 위해서는 같은 지침 제23조에 따라, 부패방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27조 등에 따라, 행동강령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는 청렴포털 등록 등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그 외에도 같은 지침 제28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와 제4장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및 제60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2. 피신고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임면권자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첩"

2. 법 제59조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

제23조(위원회의 상정) ①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주심위원이 지정된 사건 중 제20조의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사항의 내용상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27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28조(신고사항의 고발·이첩)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건을 고발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발·이첩된 사항의 결과에 대한 처리는「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관련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없이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이하 생략)

②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기관에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3. 생략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21. 생략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연처리되고 있는 이첩 사건의 사후 관리를 위해 「행동강령 신고지침」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30조에 따라,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제1항). 특히, 이첩한 신고에 관하여는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제2항), 부패방지국장은 그 점검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 보고할 수 있다(제3항).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0조(처리상황 점검)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1. 6월 ~ 2025. 1월) 중 총2,782건의 행동강령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과장은 총14건에 대하여 부패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를 거쳐 조사기관에 이첩하였다.

[별표 1] 감사대상기간 중 행동강령 신고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 배정 | 처리 | | | | |
|---|---|---|---|---|---|---|
| | | 소계 | 위반통보 | 이첩 | 송부 | 종결 |
| **계** | **2,782** | **2,995** | **161** | **14** | **2,000** | **818** |
| 2021.6월~ | 982 | 1,107 | 35 | - | 872 | 198 |
| 2022 | 798 | 803 | 26 | 1 | 578 | 198 |
| 2023 | 659 | 718 | 34 | 8 | 510 | 166 |
| 2024 | 329 | 342 | 66 | 2 | 39 | 235 |
| ~2025.1월 | 14 | 25 | - | 3 | 1 | 21 |

「행동강령 신고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장은 이첩된 신고사건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했으나, 조사기관의 처리기간에 해당되는 60일을 도과한 후에도 장기간 지연된 사건에 대한 처리상황 점검이 미흡하고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사건은 총3건으로 확인되었다.

「행동강령 신고지침」제30조에 따른 처리상황 점검은 구체적으로 ☆☆☆☆과장 주도의 자발적인 점검 후 부패방지국장을 통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이어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타 국 주무과(★★★★)에서 반기별로 실시하는 '이첩·송부·재조사 사건 사후관리 현황 점검'을 통해 일부 사건의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표 1] 행동강령 신고 중 조사기관의 처리 지연 점검 및 위원회 보고 현황

| 연번 | 접수번호 | 접수일 | 의결일 | 결과 회신일 | 자체 점검 | 위원회 보고 |
|---|---|---|---|---|---|---|
| 1 | 2021행강***** | 2021-10-15 | 2022-01-10 | 2022-09-05 | 점검 미흡 | 미보고 |
| 2 | 2024행강***** | 2024-02-01 | 2025-01-20 | - | 점검 미흡 | 미보고 |
| 3 | 2024행강***** | 2024-05-13 | 2025-01-20 | - | 점검 미흡 | 미보고 |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 ☆☆☆☆과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조사기관에서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을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도 반기별로 보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패방지국 ☆☆☆☆과장은 조속한 시일 내 행동강령 신고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 전반을 점검하시고, 이 중 처리기간이 지난 이첩신고에 대해서는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 점검결과를 정리하여 부패방지국장을 통해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개선요구)**, 향후에는 신고사항 점검 및 위원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주의 및 개선요구

**제　　목**　이첩한 청탁 신고의 처리지연 현황 위원회 보고 미이행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조 치 부 서**　○○○○과, ●●●●센터

**내　　용**

###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과 및 ●●●●센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1조, 제21조, 제32조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청탁 신고'라 한다)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탁 신고 접수·처리 업무 전반에 관한 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그림 1]과 같은 부패방지종합시스템인 '청렴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1] 청렴포털 체계

[그림 2] 청렴포털 신고 화면(1)

[그림 3] 청렴포털 신고 화면(2)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우리 위원회는 청탁 신고사건의 구체적 신고접수.처리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이하 '청탁 신고지침'이라 한다)을 예규로 규정하고 있다.

청탁 신고 중 하나의 유형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채용비리에 관한 신고의 경우, 종래「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에서 처리해 왔으나, '●●●● 센터'가 정식 직제화된 이후로는 「청탁 신고지침」에 포함하여 규정[1] 하고 있다.

청탁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장 및 ●●●●센터장은 「청탁 신고지침」 제12조에 따라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외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각 '이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첩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침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부패방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이첩을 의결하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한다. 또한, 청탁 신고의 조사결과는 같은 지침 제16조 등에 따라 청렴포털 등록 등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청탁금지법」 제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하고,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사결과를 신고자 및 우리 위원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서는 일반적 의미의 청탁 신고(청탁금지제도과 처리 중) 외에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조사 및 처리하고 있는 채용비리에 관한 신고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이하 청탁 신고에는 채용비리 신고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신고의 심사)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의견서와 신고서, 확인조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첩

2. 제1호에 따른 이첩이나 이 조 제3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송부

(이하 생략)

제13조(신고의 위원회 상정) ①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제1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제15조(신고의 이첩·송부)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신고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첩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6조(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제33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생략)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조사 진행 상황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청탁 신고지침」 제21조는 부패방지국장 등이 신고의 접수,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신고 등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특히, ○○○○과장 및 ●●●●센터장은 이첩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제2항),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같이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제3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1조(처리상황 점검) ①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신고 등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1. 6월 ~ 2025. 1월) 중 ○○○○과장 및 ●●●●센터장이 조사기관에 이첩한 청탁 신고 사건은 채용비리 신고를 제외한 일반 청탁 신고 총33건과 채용비리 신고 총25건을 합쳐 총58건에 이른다.

[표 1] 감사대상기간 중 청탁 신고 처리결과 1 (채용비리 신고 제외)

(단위: 건)

| 연도 | 이첩 | 관계기관 송부 | 종결 | 계 |
|---|---|---|---|---|
| **계** | **33** | **224** | **229** | **486** |
| 2021.6월~ | 5 | 44 | 48 | 97 |
| 2022 | 9 | 58 | 57 | 124 |
| 2023 | 10 | 72 | 50 | 132 |
| 2024 | 9 | 44 | 66 | 119 |
| ~2025.1월 | - | 6 | 8 | 14 |

[표 2] 감사대상기간 중 청탁 신고 처리결과 2 (채용비리 신고)

(단위: 건)

| 연도 | 이첩 | 관계기관 송부 | 종결 | 계 |
|---|---|---|---|---|
| **계** | **25** | **74** | **120** | **219** |
| 2023 | 17 | 32 | 67 | 116 |
| 2024 | 5 | 38 | 48 | 91 |
| ~2025.1월 | 3 | 4 | 5 | 12 |

「청탁 신고지침」에 따르면, 조사기관에 이첩 후 조사기관에서의 처리기간(60일)을 넘어 장기간 도과한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처리상황 점검 및 위원회 보고가 이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미흡한 신고 건은 총19건으로 확인되었다. 즉, 해당 사건들은 이첩 후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이므로, ○○○○과장 및 ●●●●센터장이 각각 같은 지침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해야 하고, 부패방지국장은 그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했으나, 감사대상기간 중 지연 이첩 사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3] 청탁 신고 중 조사기관의 처리 지연 점검 및 위원회 보고 현황

| 연번 | 접수번호 | 접수일 | 의결일 | 결과 회신일 | 자체 점검 | 위원회 보고 | 소관부서 |
|---|---|---|---|---|---|---|---|
| 1 | 2021청탁***** | 2021-06-23 | 2021-09-06 | 2022-06-28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2 | 2021청탁***** | 2021-12-13 | 2022-01-10 | 2022-08-11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3 | 2022청탁***** | 2022-04-07 | 2022-06-13 | 2023-06-30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4 | 2022청탁***** | 2022-09-14 | 2022-10-17 | 2023-09-20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5 | 2023청탁***** | 2023-02-15 | 2023-04-10 | 2024-06-14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6 | 2023청탁***** | 2023-05-24 | 2023-06-26 | 2024-03-22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7 | 2023청탁***** | 2023-07-19 | 2023-09-04 | 2024-09-05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8 | 2023청탁***** | 2023-09-12 | 2023-11-20 | 2024-10-04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9 | 2023청탁***** | 2023-11-24 | 2024-03-04 | 2024-10-15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10 | 2024청탁***** | 2024-06-14 | 2024-08-26 | 2025-04-30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11 | 2023청탁***** | 2023-02-14 | 2023-04-24 | 2024-03-11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12 | 2023청탁***** | 2023-03-24 | 2023-04-24 | 2024-12-06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13 | 2023채용***** | 2023-07-03 | 2023-09-04 | 2024-05-24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14 | 2023채용***** | 2023-08-31 | 2023-11-13 | -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15 | 2023채용***** | 2023-09-05 | 2023-11-13 | 2024-06-18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 | | | | | | |
|---|---|---|---|---|---|---|---|
| 16 | 2024채용***** | 2024-03-07 | 2024-06-24 | 2025-03-17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17 | 2024채용***** | 2024-04-09 | 2024-12-09 | -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18 | 2024채용***** | 2024-06-20 | 2024-11-11 | -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 19 | 2024채용***** | 2024-08-20 | 2025-01-20 | - | 점검 미흡 | 미보고 | ●●●● |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 ○○○○과장 및 ●●●●센터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조사기관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그 점검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패방지국 ○○○○과장 및 ●●●●센터장은 조속한 시일 내 청탁 신고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 전반을 점검하시고, 이 중 처리기간이 지난 이첩신고에 대해서는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 점검결과를 정리하여 부패방지국장을 통해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개선요구)**, 향후에는 신고사항 점검 및 위원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주의 및 개선요구

**제　　목**　이첩한 이해충돌 신고의 처리지연 현황 위원회 보고 미이행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5조 등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이해충돌 신고'라 한다)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해충돌 신고 접수·처리 업무 전반에 관한 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그림 1]과 같은 부패방지종합시스템인 '청렴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1] 청렴포털 체계

[그림 2] 청렴포털 신고 화면(1)

[그림 3] 청렴포털 신고 화면(2)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우리 위원회는 이해충돌 신고 사건의 구체적 신고접수.처리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이하 '이해충돌 신고지침'이라 한다)을 예규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팀장은 「이해충돌 신고지침」 제15조에 따라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외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첩을 위해서는 「이해충돌 신고지침」 제16조에 따라, 부패방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이해충돌 신고 처리결과는 같은 지침 제17조, 제18조 등에 따라 청렴포털 등록 등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하고,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및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신고의 심사)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의견서와 신고서, 확인조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침상 주관 부서(장)는 청렴정책총괄(장)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는 지침 마련 당시 주관 부서가 청렴정책총괄과 소속 임시조직의 지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2024. 12. 3.부터 이해충돌방지팀이 별도의 독립된 부서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지침상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보고서에는 2025. 6월 현재 지침 개정 작업이 준비 중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처리절차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법문의 인용 부분 외에는 '청렴정책총괄과(장)' 부분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기술한다.

1.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첩

2. 제1호에 따른 이첩이나 이 조 제3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송부 (이하 생략)

제16조(신고의 위원회 상정) ①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제1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생략)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하 생략)

한편, ◎◎◎◎팀장은 「이해충돌 신고지침」 제22조에 따라 신고의 접수,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신고 등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제1항), 이첩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제2항).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같이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제3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2조(처리상황 점검) ①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신고 등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첩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1. 6월 ~ 2025. 1월) 중 ◎◎◎◎팀장이 이해충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에 이첩한 이해충돌 신고 사건은 총21건이었다.

[표 1] 감사대상기간 중 이해충돌 신고 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 | 이첩 | 관계기관 송부 | 기각 | 종결 | 계 |
|---|---|---|---|---|---|
| **계** | **21** | **42** | **5** | **148** | **216** |
| 2022.5월~* | 2 | 2 | 1 | 12 | 17 |
| 2023 | 6 | 8 | 1 | 46 | 61 |
| 2024 | 8 | 29 | 3 | 86 | 126 |
| ~2025.1월 | 5 | 3 | 0 | 4 | 12 |

* ◎◎◎◎팀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 5. 19.자부터 이해충돌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음

이렇게 이첩한 신고사건 가운데 조사기관에서 지연처리된 사건, 즉, 조사기관의 처리기간(60일)을 도과하여 과도하게 지연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신고지침」 제22조에 따라, ◎◎◎◎팀장이 지연되고 있는 해당 이첩 사건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부패방지국장을 통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했으나,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처리 현황 점검 및 위원회 보고가 모두 미흡했던 사건은 총8건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이해충돌 신고 중 조사기관의 처리 지연 점검 및 위원회 보고 현황

| 연번 | 접수번호 | 접수일 | 의결일 | 결과 회신일 | 자체 점검 여부 | 위원회 보고 여부 |
|---|---|---|---|---|---|---|
| 1 | 2023이해***** | 2023-08-14 | 2023-12-18 | 2025-05-12 | 점검 미흡 | 미보고 |
| 2 | 2023이해***** | 2023-10-13 | 2023-12-18 | 2024-08-09 | 점검 미흡 | 미보고 |
| 3 | 2023이해***** | 2023-11-30 | 2024-02-05 | 2024-10-30 | 점검 미흡 | 미보고 |
| 4 | 2024이해***** | 2024-02-20 | 2024-09-09 | 2025-02-10 | 점검 미흡 | 미보고 |
| 5 | 2024이해***** | 2024-07-30 | 2025-01-06 | - | 점검 미흡 | 미보고 |
| 6 | 2024이해***** | 2024-07-31 | 2025-01-06 | - | 점검 미흡 | 미보고 |
| 7 | 2024이해***** | 2024-08-28 | 2025-01-06 | - | 점검 미흡 | 미보고 |
| 8 | 2024이해***** | 2024-09-25 | 2025-01-06 | - | 점검 미흡 | 미보고 |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 ◎◎◎◎팀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조사기관에서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그 점검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패방지국 ◎◎◎◎팀장은 조속한 시일 내 이해충돌 신고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 전반을 점검하시고, 이 중 처리기간이 지난 이첩신고에 대해서는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 점검결과를 정리하여 부패방지국장을 통해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개선요구)**, 향후에는 신고사항 점검 및 위원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 직제 변경 내역을 현행 지침에 조속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개 선 요 구

**제　　목**　이해충돌방지법상 비실명 대리신고 미도입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5조 등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이해충돌 신고'라 한다)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2018. 4. 17.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해당 법 제8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 등을 적은 문서, 즉,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우리 위원회 소관 반부패 법률 중 「청탁금지법」(2021. 12 .7. 도입) 및 「부패방지권익위법」(2022. 1. 4. 도입) 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 법령상 규정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법률 모두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및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기명의 문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할 수는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이하 생략)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신고자가 이해충돌 신고 시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그칠 뿐, 아직까지 법률상 제도로서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신분 노출 및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실명을 밝히고 싶지 않은 신고자에게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실제로, 감사대상기간(2021. 6월 ~ 2025. 1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변호사를 통해 신고된 이해충돌 신고사건이 「이해충돌방지법」상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없어 행동강령 신고로 접수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다른 신고사건과 같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이중캐비닛을 통한 비밀 보호 강화가 요구되므로, 관련규정 마련 및 안전한 보관시설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에는 내부신고자 지원을 위해 조사 및 쟁송절차, 보호신청 등에 소요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해당 제도는 2024. 2. 6.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도 반영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고·보호 관련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패방지국 ◇◇◇◇팀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고, 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 설비를 구축하시기 바라며,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제도 도입 등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와 연계된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선)**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통 보

**제　　목**　청렴컨설팅 심층진단분석 프로그램 설계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조 치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청렴컨설팅’은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를 기초로 청렴도가 높은 기관(1~2등급)의 우수한 청렴정책과 추진 노하우를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4~5등급)에 공유.전파함으로써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청렴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 우리 위원회가 ’06년부터 수행 중이다.

[표 1] 청렴컨설팅 개요

○ (대상) 매년 청렴도 우수기관(1~2등급, 멘토)과 미흡기관(4~5등급, 멘티)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을 조사 후 그룹단위(멘토1+멘토2)로 선정

※ ’24년 컨설팅 신청 35개 그룹 중 심사(내・외부위원)를 통해 12개 그룹 선정

○ (방법) 멘토·자문위원·위원회가 부진기관의 특수성, 유사기관 적용사례,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

○ (효과) 컨설팅 실시연도의 청렴도 향상 여부로 효과성 검증

※ ’24년도 청렴컨설팅을 실시한 24개 부진기관 중 18개 기관(75%)의 청렴도 향상

청렴컨설팅의 효과를 높이고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 부진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진단하기 위하여 청렴컨설팅 담당부서(◆◆◆◆과)는 '23년부터 '심층진단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 의하면, 심층진단(FGI) 기법이란 기관 내·외부의 고착화된 부패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선정한 전문 업체를 통하여 조직 내부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는 것을 이른다.

[표 2] 청렴컨설팅 심층진단분석 개요

○ (대상) 컨설팅 추진 의지, 반부패시책 추진 여건, 설문조사 결과 및 예산 규모(연구용역비, '24년 기준 4.200백만원 신규 투입) 등을 고려하여 7개 기관 선정

※ 청렴컨설팅 멘티기관 중 희망 기관 또는 1차 자문회의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중 자문위원·위원회가 논의 후 선정

○ (방법) ①용역 수행업체 선정, ②내부 구성원들의 직접 참여·워크숍 토론 등을 거쳐 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마련

○ (효과) '24년도 심층진단분석 대상 5개 기관 중 4개 기관(80%)의 청렴도가 향상

※ '23년에는 4개 기관중 3개 기관(75%)이 상승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과는 '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청렴컨설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제27조의2 신설)하고, 매년 '청렴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 선정,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청렴컨설팅 심층진단분석’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23년부터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연도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3년도 예시)>**

<연구용역비(260목) 공통지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이하 생략)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에서 추진하는 ‘청렴컨설팅’ 업무는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원인을 진단하여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이다. ◆◆◆◆과는 일반 컨설팅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기존 방식보다 깊이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23년부터 ‘심층 진단기법’을 도입하였다고 설명한다.

해당 용역의 제안요청서에는 사업목적으로 ‘청렴컨설팅의 효과성 제고 및 청렴도의 장기적 상승을 위해 ‘심층진단·분석’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원인 진단, 결과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제시하고 있고, 과업내용으로는 ▲심층진단 프로그램 설계, ▲인터뷰 대상자 모집 등, ▲집단토론 및 개인별 인터뷰 진행 및 ▲진단·분석 결과물 산출을 들고 있다.

그런데, 최초로 실시한 ’23년도 심층진단 연구용역 완료 후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워크숍 외에 당초 사업목적 내지 과업내용에 해당되는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프로그램 설계’, ‘진단·분석 결과물 산출’ 등이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 등 만으로는 심층진단 결과물로 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자료만이 제시되어 있다.

실시기관별 워크숍 결과보고서 결론에서도 ‘신생 조직으로서의 시스템 고도화’, ‘부서간 직원간 소통 협력 촉진’ 및 ‘부서장이 대화의 장 마련’ 등 해당 기관의 조직운영 과제 등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므로 심층분석 프로그램으로 보기에 부족한 측면[3]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3] ‘23년 심층진단분석 결과

○ 전체일정:

| 연번 | 기관명 | 운영일자 | 참여자 | 주요내용 |
|---|---|---|---|---|
| 1 | 부산동구청 | 23.5.30(화) 15시-16시 | 5명 (동구청3명, 수행사2명) | • 희망강의주제<br>- 고위직 관리자의 리더십과 소통능력 함양<br>- 구체적인 훈련을 통한 ACTION 과제 도출희망, 내부 조직 활성화를 위한 TFT운영중<br>- 의견을 조직문화 제도로 활성화 된 사례도 존재함 |
| 2 |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 23.5.31(수) 14시-15시 | 6명 (동구청3명, 수행사3명) | • 희망강의주제<br>- 타기관의 사례<br>- 일하는 방식변화(상명하복 극복), 상호소통과 화합•참여시 보상관련 : 기념품, 내부적인 마일리지 적립 제공 예정•내부조직 활성화를 위한 TFT (혁신 어벤져스)과의 연계성 도출 희망<br>- 작은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 도출 필요 |
| 3 |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 23.6.2(목) 14시-15시 | 7명 (한수정3명, 수행사3명, 권익위1명) | • 희망강의주제<br>- 소통, 불합리한 관행 근절,맑은 조직문화•기관 내 소통의 어려움<br>- 중간관리자와의 상위 관리자간의 소통 어려움<br>- 부서간 협업의 어려움•다양한 의견 도출과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교육 구성원 |
| 4 | 방위사업청 | 23.6.2(목) 14시-15시 | 7명 (방위청2명, 수행사3명, 권익위1명) | • 희망강의 주제<br>- 부서별 소통이슈 및 해결방안 도출<br>- 다양한 직군/세대간의 소통 방법•청렴도 개선을 위한 작은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 도출 필요<br>- 본인, 부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 |

3) 2023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시 국회 정무위에서도 ’23년도 일반회계 예산사업중 연구용역비(260목)로 진행한‘청렴컨설팅 심층진단분석’사업에 대해 용역 수행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물은 ’23년도 ‘청렴컨설팅 심층진단분석’ 연구용역 사업이 해당 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해당 사업예산이 ’23년과 ’24년 각각 2,400만원이었고, ’25년에는 전년 대비 금1,800만원이 증액된 금4,2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규모가 확장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한 집행에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컨설팅을 받은 기관들의 청렴컨설팅 이후 청렴도 등급 변화를 살펴보면, 컨설팅이 이루어진 당해연도에는 컨설팅의 효과로 컨설팅 대상 기관들의 청렴도가 상승한 기관이 다수인 반면, 컨설팅 실시 후 1~2년이 경과되어서는 일부 기관의 청렴도가 청렴도 측정 신청 당시의 미흡 등급(4등급, 5등급)과 동일해지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기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렴도 컨설팅을 실시한 해당 연도 이후에도 매년 실시하는 컨설팅 결과(구체적인 우수 사례 포함 등)를 모든 공공기관등과 공유하도록 제공하여 타 기관이 벤치마킹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와 같이 당해연도 컨설팅 참여기관에만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관행으로는 컨설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3] 연도별 청렴컨설팅 실시기관(멘티)의 종합청렴도 변화 분석

| 연도 | 멘티 기관수 (컨설팅 대상) | 청렴컨설팅 실시한 당해연도 | 청렴컨설팅후 1년 경과 | 청렴컨설팅후 2년 경과 | 비고 |
|---|---|---|---|---|---|
| 2021년 | 22개 | 상승 17개<br>동일 3개<br>하락 2개 | 상승 15개<br>**동일 7개**<br>**하락 없음** | 상승 11개<br>**동일 8개**<br>**하락 1개**<br>*평가제외 1개 | |
| 2022년 | 23개 | 상승 17개<br>동일 6개<br>하락 없음 | 상승 4개<br>**동일 14개**<br>**하락 5개** | 상승 7개<br>**동일 7개**<br>**하락 9개** | |
| 2023년 | 24개 | 상승 13개<br>동일 11개<br>하락 없음 | 상승 19개<br>**동일 4개**<br>**하락 없음**<br>*평가제외 1개 | 25년 평가결과<br>발표후 분석 예정 | |
| 2024년 | 24개 | 상승 18개<br>동일 5개<br>하락 1개 | ’25년 평가결과<br>발표후 분석 예정 | - | |

* 청렴도 변화 분석 기준: 컨설팅 신청 당시 등급과 비교하여 상승여부 분석

**관계부서 의견** ◆◆◆◆과는 '23년 심층진단분석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첫 해로 일부 미흡사항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는 청렴컨설팅 심층진단분석 용역 수행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수행업체와의 계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시고, 청렴컨설팅을 실시한 기관들의 우수사례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적극 게시하는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청렴컨설팅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개 선 요 구

**제　　목**　이러닝 교육과정별 수료시간 기준 통일성 부재

**소 관 부 서**　청렴연수원

**조 치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청렴연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81조, 제81조의2 등에 따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이하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방법에는 대면 및 비대면(일명 ‘이러닝’) 나뉘는데, 청렴연수원 □□□□과에서는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배움터, 공직유관단체・사립학교・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배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K-MOOC 등 다양한 교육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 이러닝 교육 학습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에는 청렴연수원이 직접 제작한 이러닝 콘텐츠를 기관별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1] 이러닝 교육플랫폼 현황

| 구 분 | 대상 | 주요 특징 |
|---|---|---|
| 나라배움터 | 공무원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플랫폼으로 각 부처별 나라배움터 운영,<br>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는 타 부처 공무원도 수강 가능 |
| 청렴배움터 | 공직유관단체,<br>사립학교, 언론사 등 | (청렴연수원 소관) 나라배움터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학습관리시스템 임차 운영 |
| K-MOOC<br>(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일반국민 | (교육부 소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업 운영,<br>대학·기관의 우수한 강의를 누구나,언제,어디서나 무료로 수강 가능 |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청렴연수원은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청렴연수원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3조제4항에서는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사이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렴연수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렴연수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간 교육기본계획) ④ 이러닝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2.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3.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4.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5.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
6. 수당지급 등 대우
7.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자가 학습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별 '이수기준(또는 수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닝 교육의 이수기준에는 일정 수준의 학습진도율 충족, 학습평가 응시 및 일정 점수 이상 획득, 교육수료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일정량의 학습 시간(이하 '인정시간'이라 한다) 등 교육과정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표 2] 이러닝 교육과정 이수기준 예시(평가요소별 세부 배점표)

| 구 분 | 학습진도 | 학습평가 | 학습시간 | 합 계 |
|---|---|---|---|---|
| 수료기준 | **진도율 90% 이상** | **평가 60점 이상** | 인정시간의 30% 이상 | - |
| 배점내역 | 70점 | 30점 | - | 100점 |

한편, 대면교육의 경우에는 보통 학습한 시간만큼을 교육실적으로 인정(Ex. 2시간 교육 시 2시간 실적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러닝 교육의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콘텐츠 차시[4]를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하기도 하고, 학습 시간을 실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2024년 청렴연수원 이러닝 교육과정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나라배움터 교육'을 예로 들면,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교육과정은 7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을 완료하면 '차시'를 기준으로 7시간의 교육실적을 인정받는다. 반면, '청렴, 다른 나라는 어떨까?' 교육과정은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습 완료 시 '학습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만 인정받는다. [표 2]와 같이 2024년 청렴연수원 이러닝 교육과정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나라배움터 교육은 총22개[5] '세부 교육과정'별로 '인정시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표 2] 2024년 나라배움터 교육과정별 인정시간 기준

**세부 교과편성표**

| 연번 | 구분 | 과목분류 | 과정명 | 차시 (인정시간) | 운영횟수 | 비고 |
|---|---|---|---|---|---|---|
| 1 | 입문 | 윤리관(청렴) | **청렴, 다른 나라는 어떨까?** | **4(2)** | 11 | '23년 하반기 도입 |
| 2 | 입문 | 윤리관(청렴) | 청렴 북 콘서트 | 5(2) | 11 | '22년 신규 |
| 3 | 입문 | 윤리관(청렴) |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 **7(7)** | 11 | '21년 보완 |
| 4 | 입문 | 윤리관(청렴) | 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십<br>* 수어과정 별도 운영 | 8(8) | 11 | '21년 보완 |
| 5 | 입문 | 윤리관(청렴) |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br>* 수어과정 별도 운영 | 10(10) | 11 | '21년 보완 |
| 6 | 기초 | 윤리관(청렴) | 문화와 생활 속 청렴 | 2(2) | 11 | '22년 신규 |

4) 보통 교육이나 수업에 사용되는 용어이며,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세부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Ex) 첫 번째 교육을 1차시 교육, 두 번째 교육을 2차시 교육 등)
5) 구체적으로는 일반공직자용 교육과정 수이며, 시청각 장애 공직자 겸용 교육과정인 수어과정 5개가 별도 운영되고 있다.

| | | | | | | |
|---|---|---|---|---|---|---|
| 7 | 기초 | 윤리관(청렴) |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 2 | 2(2) | 11 | '22년 신규 |
| 8 | 기초 | 윤리관(청렴) | 부패상황 자각하기 | 7(7) | 11 | '19년 신규 |
| 9 | 기초 | 윤리관(청렴) | 부패 앞에 단호해지기 | 8(8) | 11 | '20년 보완 |
| 10 | 기초 | 윤리관(청렴) | 청렴판단력 키우기 | 8(8) | 11 | '20년 신규 |
| 11 | 전문 | 윤리관(청렴) | 현장 공직자를 위한<br>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 4(2) | 11 | '23년 하반기<br>도입 |
| 12 | 전문 | 윤리관(청렴) |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br>절차 | 5(2) | 11 | '23년 하반기<br>도입 |
| 13 | 전문 | 윤리관(청렴) |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br>* 수어과정 별도 운영 | 4(4) | 11 | '22년 보완 |
| 14 | 전문 | 윤리관(청렴) |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 5(5) | 11 | '21년 신규 |
| 15 | 전문 | 윤리관(청렴) | 청탁금지법의 이해<br>* 수어과정 별도 운영 | 6(6) | 11 | '22년 보완 |
| 16 | 전문 | 윤리관(청렴) |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 8(8) | 11 | '22년 보완 |
| 17 | 전문 | 윤리관(청렴) |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 12(12) | 11 | '22년 보완 |
| 18 | 전문 | 윤리관(청렴) |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 15(15) | 11 | '22년 보완 |
| 19 | 전문<br>(사례) | 윤리관(청렴) |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br>* 수어과정 별도 운영 | 7(7) | 11 | '22년 보완 |
| 20 | 전문<br>(사례) | 윤리관(청렴) |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 10(10) | 11 | '20년 보완 |
| 21 | 전문 | 일반공공행정<br>(국민권익) | 행정심판 실무 입문 | 6(6) | 11 | '20년 신규 |
| 22 | 전문 | 일반공공행정<br>(국민권익) |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 10(10) | 11 | '22년 보완 |

[출처: 2024년 청렴연수원 이러닝 운영계획]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표 3]과 같이 2024년 청렴연수원 이러닝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총30개 교육과정 중 콘텐츠 ‘차시’를 기준으로 교육실적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은 총22개, ‘학습 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실적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은 총8개로 확인되었다.

[표 3] 2024년 이러닝 교육플랫폼별 수료시간 기준(차시/학습시간) 현황

(단위: 과정)

| 연번 | 구 분 | 차시 기준 | 학습시간 기준 | 총 교육과정 |
|---|---|---|---|---|
| 1 | 나라배움터<br>(공무원) | 18개 과정 | 4개 과정 | 22개 과정 |
| 2 | 청렴배움터<br>(공직유관단체 등) | 4개 과정 | 1개 과정 | 5개 과정 |
| 3 | K-MOOC<br>(일반국민) | - | 3개 과정 | 3개 과정 |
| 합계 | | **22개 과정** | **8개 과정** | **30개 과정** |

감사대상기간(2021. 6월 ~ 2025. 1월) 중에도 [표 4]와 같이 차시별 내지 학습 시간별 기준으로 세부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교육실적을 인정하기 위한 ‘인정시간’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표 4] 이러닝 교육과정별 수료시간 기준(차시/학습시간) 현황

| 연번 | 연 도 | 차시 기준 | 학습시간 기준 | 총 교육과정 | 비 고 |
|---|---|---|---|---|---|
| 1 | 2021년 | 16개 과정 | 4개 과정 | 20개 과정 | 수어교육과정 제외 |
| 2 | 2022년 | 19개 과정 | 4개 과정 | 23개 과정 | |
| 3 | 2023년 | 22개 과정 | 8개 과정 | 30개 과정 | |
| 4 | 2024년 | 22개 과정 | 8개 과정 | 30개 과정 | |
| 5 | 2025년 | 23개 과정 | 7개 과정 | 30개 과정 | |

이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2024년 청렴연수원 이러닝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에 따른 ‘나라배움터 교육’의 하나인 ‘청렴, 다른 나라는 어떨까?’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차시’를 기준으로 인정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총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학습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총2시간밖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되므로, 교육 대상자 입장에서 인정시간이 불합리하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이러닝 교육과정 실적 산정 시, 대면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등 통일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청렴연수원 □□□□과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러닝 교육과정별 교육실적 인정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렴연수원 □□□□과는 이러닝 교육과정별 교육실적 인정 기준이 통일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활용 미흡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센터, ◇◇◇◇과,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바뀔 때에는 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그림 1]과 같이 전임자는 인계서를 작성하고, 후임자는 인계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업무를 인수하며, 인계자의 상급자(부서장, 국장 등)는 인계·인수 과정에 입회하여 인계·인수 현황을 확인한다.

[그림 1] 업무 인계·인수 흐름도

| 전임자 | | 후임자 | | 상급자<br>(업무 부서장, 국장 등) |
|---|---|---|---|---|
| **인계인수서 인계** | ⇨ | **인계인수서 인수** | ⇨ | **인계인수서 입회** |

감사대상기간(2021. 6월 ~ 2025. 1월) 중 부패방지국 6개 및 청렴연수원 2개 부서에서는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및 서면 등을 통해 총 199건의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었다. 인계인수서의 내용에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계·인수하는 업무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할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그림 2]「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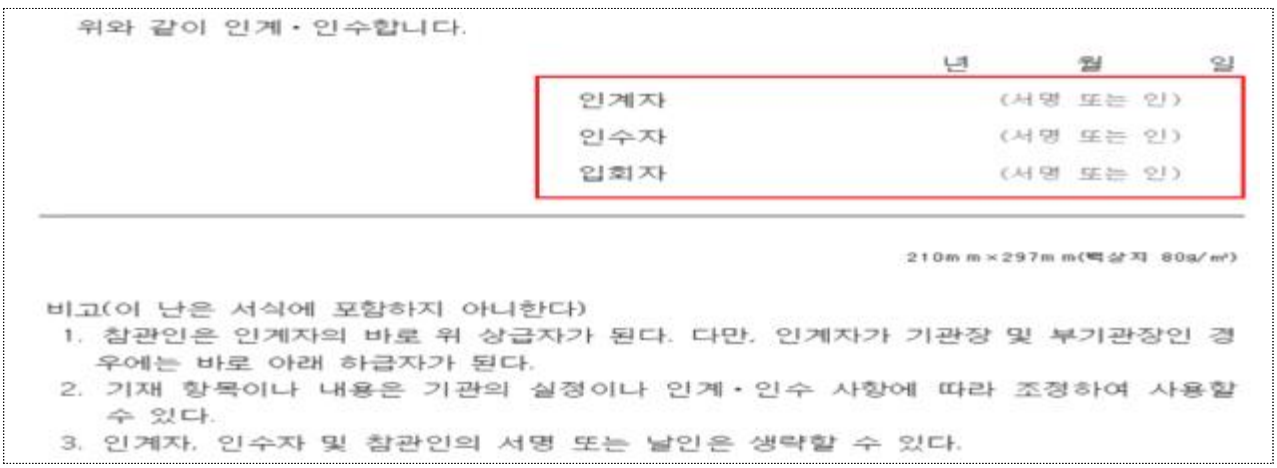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업무 인계·인수 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와 입회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21. 6월 ~ 2025. 1월) 동안 인계인수된 건에 대해 인계인수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 있었다.

**[그림 3]** 인계인수시스템 화면

**[그림 4]** 인수·인계·입회 완료 화면 예시

**[그림 5]** 인수·입회 미결상태 화면 예시

**[그림 6]** 입회 미결상태 화면 예시

인계인수시스템 및 부서별 업무분장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인계인수시스템상 인계·인수·입회가 완결되지 않은 건수는 총199건 중 61건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인수단계 미결 21건, 입회단계 미결 20건, 기타 사유로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 20건이 확인되었다.

[표 1] 감사대상기간의 인계·인수·입회 현황

(단위: 건)

| 구분 | | 인계인수 건수 | 입회 완료 건수 | 소계 | 인수미결 건수 | 입회미결 건수 | 기타 (서면 작성 등) |
|---|---|---|---|---|---|---|---|
| 합계 | | 199 (100%) | 138 (69.3%) | 61 (30.6%) | 21 | 20 | 20 |
| 부패 방지국 | ☆☆☆☆과 | 32 | 29 | 3 | - | 2 | 1 |
| | ★★★★과 | 21 | 21 | - | - | - | - |
| | ○○○○과 | 16 | 14 | 2 | 1 | 1 | - |
| | ●●●●과 | 28 | 11 | 17 | 6 | 5 | 6 |
| | ◎◎◎◎과 | 20 | 12 | 8 | - | - | 8 |
| | ◇◇◇◇센터 | 12 | 9 | 3 | - | 1 | 2 |
| 청렴 연수원 | ◆◆◆◆과 | 28 | 13 | 15 | 7 | 6 | 2 |
| | □□□□과 | 42 | 29 | 13 | 7 | 5 | 1 |

(자료 출처: 부서별 업무분장 및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과 청렴연수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원 전보 등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센터장, ◆◆◆◆장, □□□□과장은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변경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시 정 요 구

제　　목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센터,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각 부서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하며, 같은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 여행지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2023.3.2.이전 단가)

(단위: 원)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 20,000 |
| 제2호 (1호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 20,000 |

| | | | | | | | |
|---|---|---|---|---|---|---|---|
|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 | | | | | |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2023.3.2.이후 단가)

(단위: 원)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 제2호 (1호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

* 1호: 장·차관, 고위공무원 가~나급, 1급, 2~3급(국장급만) 보수를 받는 공무원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같은 영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 조정사유)

1)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에 따르면 위 규정상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란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출장 중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1. 6월 ~ 2025. 1월) 중 출장일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국 1개 부서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출장일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지 않아 [표 1]과 같이 총 4건(100,000원)의 출장일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출장식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국 5개 부서 및 청렴연수원 1개 부서에서 출장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였음에도 [표 2]와 같이 출장식비를 감액 지급하지 않은 총 29건(224,870원)의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1] 출장일비 부적정 지급 내역

| 구분 | 부서명 | 부적정 지급건수 | 부적정 지급액 | 부적정 사유 |
|---|---|---|---|---|
| 부패방지국 | ☆☆☆☆과 | 4건 | 100,000원 | · 렌터카 이용 4건 |
| 합 계 | | 4건 | 100,000원 | |

(자료 출처: 여비지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표 2]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내역

| 구분 | 부서명 | 부적정 지급건수 | 부적정 지급액 | 부적정 사유 |
|---|---|---|---|---|
| 부패방지국 | ☆☆☆☆과 | 7건 | 51,630원 | · 업무추진비 사용 7건 |
| | ○○○○과 | 1건 | 8,330원 | · 업무추진비 사용 1건 |
| | ●●●●과 | 1건 | 6,660원 | · 업무추진비 사용 1건 |
| | ◎◎◎◎과 | 2건 | 14,990원 | · 업무추진비 사용 2건 |
| | ◇◇◇◇센터 | 5건 | 41,650원 | · 업무추진비 사용 5건 |
| 청렴연수원 | ◆◆◆◆과 | 13건 | 101,610원 | · 업무추진비 사용 13건 |
| 합 계 | | 29건 | 224,870원 | |

(자료 출처: 여비지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출장여비 정산 시 차량 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부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과 청렴연수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 여비를 반납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출장여비 정산 시 차량 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출장여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센터장, ◆◆◆◆과장은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반납 조치

하고, ② 차량 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시 정 요 구

**제 목**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센터

**내 용**

###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각 부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매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되, 정규근무시간(9시~18시) 중에는 지급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 등으로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1-5. 특근매식비(210-05목))

가. 지급대상자

ㅇ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급단가

ㅇ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6] 이내로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1. 6월 ~ 2025. 1월) 중 특근매식비 지급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5개 부서에서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자 및 유연근무자 중 정규근무시간 내 출퇴근한 자 등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등 총 34건(238,000원)의 특근매식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내역

| 구분 | 부서명 | 부적정 지급건수 | 부적정 지급액 | 부적정 사유 |
|---|---|---|---|---|
| 부패방지국 | ☆☆☆☆과 | 3건 | 21,000원 |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3건 |
| | ★★★★과 | 2건 | 14,000원 |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건<br>·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1건 |

6) 최근 '25.1.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으로 특근매식비 지급단가는 7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됨

| | | | | |
|---|---|---|---|---|
| | ○○○○과 | 10건 | 70,000원 |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건<br>·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6건<br>· 출장식비 중복 지급 3건 |
| | ●●●●과 | 10건 | 70,000원 |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6건<br>·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1건<br>· 출장식비 중복 지급 3건 |
| | ◎◎◎◎센터 | 9건 | 63,000원 |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4건<br>·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3건<br>· 출장식비 중복 지급 2건 |
| 계 | | 34건 | 238,000원 | |

(자료 출처: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및 e사람 시스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연근무, 개인용무 시간 제외 미반영 등에 따라 초과근무 2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15건(44.1%), 유연근무 실시자 중 정규근무시간 내 출퇴근한 자에게 지급한[7] 경우가 11건(32.3%), 출장식비를 중복 지급한 경우 등이 8건(23.5%)으로 나타났다. 특근매식비 지급 시 대상자의 출·퇴근 기록 및 유연근무 실시내역, 근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부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반납 조치하는 한편, 특근매식비 지급 시 초과근무 2시간 초과 여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특근매식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유연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정규근무시간(9시～18시)내에 출퇴근한 경우 특근매식비을 지급할 수 없음. 예를 들어, 7시부터 15시까지 유연근무 후 17시에 퇴근지정하였을 시 유연근무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18시 이전에 퇴근하였으므로 특근매식비 집행에서 제외하여야 함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센터장은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반납 조치하고, ②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2시간 충족 여부와 출장식비 지급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조 치 부 서**　☆☆☆☆과, ★★★★과,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우리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실·국장급 전결(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로 처리하며 주된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3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 실·국장급 전결(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로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 일련번호 | 단 위 업 무 | | | 과원 | 과장·담당관 | 심의관 | 실·국장 | 사무처장 | 위원장 |
|---|---|---|---|---|---|---|---|---|---|
| 17 | 예산회계 | 업무추진비 | 50만원 이상(단, 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 | | | | ○ | | |
| | | | 50만원 미만 | | ○ | | | | |

또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명부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4. 업무추진비(240목))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의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14건이 집행 관련 품의서를 실·국장급 전결이 아닌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관련 규정 위반내역

| 구분 | 부서명 | 사용일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사용금액 | 명단 첨부 | 실국장 전결 |
|---|---|---|---|---|---|---|
| 부패 방지국 | ☆☆ ☆☆과 | 2024.11.21. | 청렴컨설팅 워크숍 다과 및 음료 | 616,000원 | ㅇ | x |
| | | 2024.11.28. | 부패방지 부진기관 대상 교육 다과 | 1,320,000원 | ㅇ | x |
| | ★★ ★★과 | 2022.04.22. |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대상기관 워크숍 참석자 식대(4.19.) | 2,000,000원 | ㅇ | x |
| | | 2022.04.22. |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대상기관 워크숍 참석자 식대(4.20.) | 3,100,000원 | ㅇ | x |
| 청렴 연수원 | ○○ ○○과 | 2022.10.21. |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연수생 | 558,000원 | ㅇ | x |
| | | 2022.11.14. |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영어과정) | 720,000원 | ㅇ | x |
| | | 2022.11.21. |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영어과정) | 939,400원 | ㅇ | x |
| | | 2022.11.23. |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영어과정) | 945,000원 | ㅇ | x |
| | | 2024.04.24.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연수 (영어과정) | 504,000원 | ㅇ | x |
| | | 2024.06.10.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 과정) | 750,000원 | ㅇ | x |

| | | | | | | |
|---|---|---|---|---|---|---|
| | | 2024.06.11.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 과정) | 660,000원 | ㅇ | x |
| | | 2024.06.14.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 과정) | 696,000원 | ㅇ | x |
| | | 2024.06.19.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 과정) | 858,000원 | ㅇ | x |
| | | 2024.08.30. | 청년인턴 청렴교육 | 960,000원 | ㅇ | x |
| 계 | | | 14건 | 14,626,400 | | |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집행 관련 품의서에 실·국장급 전결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실·국장급 전결 처리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 ★★★★과, ○○○○과는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실·국장급 전결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주 의 요 구

**제　　목**　영수증 실명서명 관련 업무추진비 규정 미준수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조 치 부 서**　☆☆☆☆과,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각 부서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 하며,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카드 영수증에 실명 서명이 없거나 사용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확한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서명을 보완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Ⅱ. 공통지침)**

카드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서명이 출력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서명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확한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서명을 보완하여야 한다(여백에 사용자명 별도 기재)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1. 6월 ~ 2025. 1월)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증빙 등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가 총 10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업무추진비 영수증상 사용자 서명 누락 현황

| 구 분 | 부서명 | 건수 | 사용금액 | 비고 |
|---|---|---|---|---|
| 부패방지국 | ☆☆☆☆과 | 1건 | 190,600원 | 사용자 실명 서명 누락 |
| 청렴연수원 | ★★★★과 | 9건 | 385,920원 | |
| 계 | | 10건 | 576,520원 | |

(자료 출처: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과 청렴연수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정부구매카드 사용 시 사용자가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후 사용자가 반드시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통보(모범사례)

**제　　목**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찾아가는 부패방지 교육’ 추진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모 범 부 서**　▨▨▨▨과

**모 범 내 용**

부패방지국 ▨▨▨▨과는 매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 후 각급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에서 제출한 부패방지교육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같은 관리 감독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매년 실시하여야 할 전체 직원 교육 이수율,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이수율 및 신규자·승진자의 대면교육 이수율은 각각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 최근 3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관리 항목별 이수율

| 부패방지교육 관리 항목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① 전체 직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 95.0% | 95.6% | **96.1%** |
| ②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이수율 | 86.6% | 92.2% | **96.3%** |
| ③ 신규·승진자 대면교육 이수율 | 80.8% | 87.1% | **93.1%** |

※ ‘24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적은 자체감사기간 동안 실태 점검 진행 중이므로 생략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에 따라, 매년 반기별(1월, 7월)로 새롭게 지정하는 기관과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현황을 고시한다.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의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과는 반부패 조직문화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 2] 최근 3년간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기관 수

| 연도 | 신규 지정 기관 | 상반기 신규 지정 | 하반기 신규 지정 |
|---|---|---|---|
| 2025년 | **67개 기관** | 67개 기관 | '25.7.1 고시 예정 |
| 2024년 | **53개 기관** | 27개 기관 | 26개 기관 |
| 2023년 | **52개 기관** | 27개 기관 | 25개 기관 |

[redacted]과는 '23년도 부패방지교육 실태점검('24.9월~10월)을 통해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차원의 이해 부족 외에도 소규모 인력,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신규 지정된 해에는 기관 자체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redacted]는 '24. 10월부터 '찾아가는 부패방지 교육'을 도입하였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별된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부패방지교육 담당 직원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 후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무료로 강의해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표 3]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 개요

○ 교육 대상 :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수요 제출 기관**
○ 교육 방법 및 시간 : **희망 일자**에 청렴정책총괄과 직원이 **방문 교육(무료) / 2시간**
○ 교육 참여 인원 : 공직유관단체 **전체 직원**
○ 교육 내용 :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 및 **연간 1회 이상 교육의무 있는 3개 법령*** 소개
* 3개 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 강의 진행 : 청렴정책총괄과 **부패방지교육 담당**

| <소규모 기관은 사무실에서 진행> | <중규모 기관은 회의장에서 진행> |
|---|---|
| | |
| *'25. 2.6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방문 교육 | * '25. 1.17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방문 교육 |

[표 4]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 실시 내역

**<2024년 상·하반기 신규 지정 기관중 방문 교육>**

| 순번 | 기관명 | 정원 | 교육 일자 | 비고 |
|---|---|---|---|---|
| 1 | ㅇㅇㅇㅇ협회 | 15명 | '24.11. 5 | 2개 기관 |
| 2 | ㅇㅇㅇㅇ협회 | 10명 | '24.11. 5 | 합동교육 |
| 3 | ㅇㅇㅇㅇ박물관 | 90명 | '24.11.11 | |
| 4 | ㅇㅇㅇㅇ재단 | 21명 | '24.11.13 | |
| 5 | ㅇㅇㅇㅇ재단 | 13명 | '24.11.14 | |
| 6 | ㅇㅇㅇㅇ센터 | 39명 | '24.11.14 | |
| 7 | ㅇㅇㅇㅇ협회 | 122명 | '24.11.18 | |
| 8 | ㅇㅇㅇㅇ위원회 | 169명 | '24.11.20 | 오전/오후(2회) |
| 9 | ㅇㅇㅇㅇ재단 | 24명 | '24.11.22 | 2개 기관 |
| 10 | ㅇㅇㅇㅇ재단 | 12명 | '24.11.22 | 합동교육 |
| 11 | ㅇㅇㅇㅇ협회 | 13명 | '24.11.27 | |
| 12 | ㅇㅇㅇㅇ진흥원 | 34명 | '25. 1 .8 | |
| 13 | ㅇㅇㅇㅇ재단 | 26명 | '25. 1.14 | |
| 14 | ㅇㅇㅇㅇ공사 | 40명 | '25. 1.15 | |
| 15 | ㅇㅇㅇㅇ공사 | 36명 | '25. 1.17 | |
| 16 | ㅇㅇㅇㅇ협회 | 94명 | '25. 1.20 | |
| 17 | ㅇㅇㅇㅇ재단 | 8명 | '25. 2. 6 | |
| 18 | ㅇㅇㅇㅇ연합회 | 13명 | '25. 2.13 | |
| 19 | ㅇㅇㅇㅇ체육회 | 20명 | '25. 2.24 | |
| 20 | ㅇㅇㅇㅇ개발(주) | 101명 | '25. 3. 5 | |
| 21 | ㅇㅇㅇㅇ연구원 | 42명 | '25. 3.10 | |
| 22 | ㅇㅇㅇㅇ정보원 | 30명 | '25. 3.12 | |
| 23 | ㅇㅇㅇㅇ박물관 | 34명 | '25. 3.17 | |

**<2025년 상반기 신규 지정 기관중 방문 교육>**

| 순번 | 기관명 | 정원 | 방문 일자 | 비고 |
|---|---|---|---|---|
| 1 | ㅇㅇㅇㅇ협회 | 10명 | '25. 5.14 | |
| 2 | ㅇㅇㅇㅇ진흥원 | 38명 | '25. 5.16 | |
| 3 | ㅇㅇㅇㅇ체육회 | 22명 | '25. 5.20 | |
| 4 | ㅇㅇㅇㅇ진흥원 | 14명 | '25. 5.21 | |
| 5 | ㅇㅇㅇㅇ체육회 | 30명 | '25. 6. 5 | 교육 예정 |
| 6 | ㅇㅇㅇㅇ관리원 | 92명 | '25. 6.12 | 교육 예정 |
| 7 | ㅇㅇㅇㅇ재단 | 17명 | '25. 6.17 | 교육 예정 |
| 8 | ㅇㅇㅇㅇ센터 | 13명 | '25. 6.17 | 교육 예정 |
| 9 | ㅇㅇㅇㅇ협회 | 48명 | '25. 6.27 | 교육 예정 |
| 10 | ㅇㅇㅇㅇ정보원 | 150명 | 7월중 | 교육 예정 |
| 11 | ㅇㅇㅇㅇ재단 | 12명 | 7월중 | 교육 예정 |
| 12 | ㅇㅇㅇㅇ체육회 | 20명 | 7월중 | 교육 예정 |
| 13 | ㅇㅇㅇㅇ협회 | 8명 | 7월중 | 교육 예정 |

※'25년 하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는 고시('25.7월) 이후 별도 수요조사 및 추진 예정

교육 내용도 ▦▦▦▦과 소관 사항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의무사항 외에 연간 1회 이상 의무교육 사항이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까지 함께 안내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연간 부패방지교육 2시간 이수 뿐 아니라 개별 법령상의 연간 1회 교육을 모두 충족하게 하는 등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의 부패방지교육이행 편의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지원 활동으로 공공기관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부패방지 관련 개별 법령상 '연간 1회 이상' 교육 의무〉**

■「**청탁금지법**」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제42조(교육 등) ③ 공공기관의 장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23조(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부패방지국 ▦▦▦▦과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통보(모범사례)]**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통보(모범사례)

**제　　목**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 등을 위한 행동강령 이행점검 강화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모 범 부 서**　▨▨▨▨과

**모 범 내 용**

부패방지국 ▨▨▨▨과는「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 따라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 및 시행,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해석,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공직자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는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관행적 부패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재정립하고 및 부패통제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와 유착된 토착형 비리를 근절하고 만성적 부패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징수 포상금.피복비 부적정 집행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지방의회: '23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하위 지방의회(4～5등급) 28개

** 광역·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17개 및 기초지자체 67개

그 결과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부정사용(약 22.5억원)과 지급취지에 맞지 않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행(약 4.2억원), 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약 42.3억원) 등을 적발하였다.

**【주요 점검결과】**

- ✔ 지방의회가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총 13,740건(약 18억, 지방의회 27개)**
- ✔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에 불필요한 등산복 등 **단체복을 구매 총 18건(약 1.6억)**
- ✔ 마라톤 대회 참가비 등 **개인부담비용을 지방의회 예산으로 사용** 등
- ✔ 징수포상금 지급취지에 맞지 않는 **관리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
- ✔ 피복비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자에게 피복이나 상품권을 제공**

또한 민생현장 속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취약시기 또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패취약분야 등을 고려하여, 일선 공공기관*이나 국민생활 밀접 위탁·대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일선 공공기관: 설·추석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 암행점검(231개)

** 국민생활 밀접·위탁대행 기관: 예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재해·안전 등) 담당 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등 24개)

**【주요 점검결과】**

- ✔ 과장급 공무원이 하급자로부터 시가 **48만원 상당의 한우·과일 선물세트 수수**
- ✔ 공무원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시가 **45만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 수수**
- ✔ 집행기준 부존재·미비로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의혹 약 7천건(약 23.9억원)**

최근 공직자들의 갑질, 특혜, 이권개입 등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인지도 및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 행동강령 이행점검 강화는 행동강령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부패방지국 ▥▥▥▥과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통보(모범사례)

**제　　목**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현장점검으로 법 이행력 제고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모 범 부 서**　▨▨▨▨팀

**모 범 내 용**

▨▨▨▨팀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착 노력을 전개해왔다. 각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배포하고, 공직자들이 법을 잘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기관 맞춤형 교육,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 다각적인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 시행('21년 제정) 3년차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기관인 지방의회 20개(광역 7개, 기초 13개)를 선정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관련 현장 실태점검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등과 총 1,391건, 약 31억 여원의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원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해 제출한 사례, 관용차 등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등을 포함해 총 2,318건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였다.

**【주요 점검결과】**

- ✔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부당 집행한 예산 총 176건(약 5,844만 원, 지방의회 9개)**
- ✔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의 특수관계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조경, 건설, 소방설비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총 259건(약 17억 8,147만 원)**
  * 주식·지분 30% 이상 및 자본금 50% 이상
-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의원 23명 적발 및 **영리활동, 재직법인·단체, 대리·자문·고문 활동 등을 누락한** 지방의원 285명 적발
- ✔ 향우회, 결혼식, 장례식, 출판기념회 등 **개인 일정 또는 공휴일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용차 운행 증빙자료 미비

이해충돌 위반 의혹 사례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추가 조사 및 조치가 실시되도록 각 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대외 발표하였다. 또한, 점검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담은 ‘지방의회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위하여 책자 제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이해충돌 사례를 확인·공유함으로써 이해충돌 취약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자정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규범 이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치할 사항** 부패방지국 ▨▨▨▨팀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통보(모범사례)

**제　　목**　대학협업 청렴특강 교육 운영

**소 관 부 서**　청렴연수원

**모 범 부 서**　▧▧▧▧과

**모 범 내 용**

청렴연수원 ▧▧▧▧과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청렴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학협업 청렴특강’을 운영하는 등 청년세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운영하였다.

2030세대는 청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실제로 MZ세대 대상 ‘우리사회 공정성 인식결과’(신문기사-헤럴드경제, 〈MZ 65% “우리사회 공정하지 않다”〉)에 의하면 대학생 등 MZ세대의 64.9%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렴에 대한 가치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대학협업 청렴특강은 주요 대학과 협업하여 2시간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학교별 상황에 따라 1시간 30분 또는 1시간 단축 과정으로도 운영되었다. 특강은 강의형, 공연형, 참여형 등으로 나뉘며, 기존의 일방적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청렴 사례를 토대로 한 이야기 중심 강의, 토론, 퍼포먼스 등 청년세대가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콘텐츠로는 공직윤리 및 공익신고 제도 강의, 반부패 법령 및 제도 이해 교육, ESG와 연결된 청렴경영 특강 등 전문 강의뿐 아니라, 연극·판소리·샌드아트·태권도 퍼포먼스 등 시각적·공감형 콘텐츠가 함께 구성되었다. 특히 청렴 뮤지컬과 연극은 비리 상황에 놓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학생들의 몰입과 반응을 유도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간 전국 총 31개 대학, 1,871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사회과학대와 사범대 학생들의 참여율이 24회(77%)로 가장 높았다. 학교별 교육참여 학생 수는 온라인 교육을 제외하면 ㅇㅇ학교(190명), ㅇㅇ대(130명), ㅇㅇㅇ대(95명) 순서로 많았으며 ㅇㅇ대, ㅇㅇ대 등에서는 교직원들도 강의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2024년에는 전체 평균 95.7점을 기록하였고, 과정 만족도와 강사 만족도는 각각 95.0점, 96.2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사 전달력, 이해하기 쉬운 사례 중심 교육, 다양한 형식(공연 포함) 등이 주요 호응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일부 대학에서는 청렴특강을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정규 교과과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025년 1학기부터 청렴 강좌를 교양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60명 정원의 정규 수업을 운영 중이며, ㅇㅇㅇ대와 ㅇㅇㅇ대학교 대학원도 2025년 2학기 강좌 개설이 확정된 상태이다.

청렴연수원 ▧▧▧▧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전국 13개 대학과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청렴특강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청년세대의 윤리적 민감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25. 6. 4. 기준 10개 대학 업무협약 체결, 6. 27. 기준 13개 대학과 협약 체결 예정

**조치할 사항** 청렴연수원 ▧▧▧▧과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